

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상호(명칭)	대표자(성명)	
	주소	전화번호	
재설정기한	제조일로부터	개월(년)	
제품명			
허가·등록일	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2항, 제3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제2항,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기한 재설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 및 시료	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. 수질검사 결과가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.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, 생산공정,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	수수료 없음
	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. 수질검사 결과가 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.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, 생산공정,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	

처리절차

